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61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3786	허종식의원	2025.10.29.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2026.3.24.) 상정 후 제안 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기후 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
	2213809	안도걸의원	2025.10.30.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01.)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 환경법안소위(2026.04.22.)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2026. 4. 22.)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으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26. 5. 19.)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 부대의견

1. 정부는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참여하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의 수익이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총사업비를 관리하고, 송전사업자는 해당사업 착수 및 종료 시 해당사업의 계약과 실행내역, 재무적 영향분석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2. 송전사업자 외의 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사업 완료 즉시 모든 권한을 송전사업자에게 이전한다.
3. 정부는 한국전력공사 송전 분야 인력이 적절한 수준으로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4. 정부는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참여하는 사업에 입지선정이 필요한 사업, 수익성이 낮은 사업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투자구간이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계약 이후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추가사업비용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전액 부담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 및 비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제2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제3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의 개발사업 시행 및 설비의 양도·양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사업시행자) (생 략)	제3조(사업시행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신 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 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8 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 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u><신 설></u>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사업 완료 즉시 해당 개발 사업과 관계된 국가기간 전력 망 설비를 제1항에 따른 송전 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 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송전사 업자는 이를 양수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 업시행자 지정의 조건과 절차, 설비의 양도·양수 방법 및 비 용의 산정·정산, 지정의 효력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생략)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략) <u><신설></u> 2. ~ 9. (생략) ③ ~ ⑥ (생략)	<u>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u> 2. ~ 9.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